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851

발의연월일: 2023. 6. 23.

발 의 자 : 윤준병 · 윤재갑 · 강득구

김영배 · 양정숙 · 민형배

김성환 · 양경숙 · 전해철

김수흥 · 서영교 · 오영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구조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 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도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 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1호).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
|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 ② | | |
|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 | |
|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 | | | |
| 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 | | | |
| 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 | | |
| 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 | |
| 1. <u>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u> 응 | 1. <u>「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u> | | |
| 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 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 | | |
| 사람 | 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 | | |
| | 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 | |
| | 따른 학교 • 사내대학 또는 원 | | |
| | 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
| | 에서 | | |
| | | | |
| 2. • 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